2023
개정세법

이승원 · 이승철

1. 법인세법
2. 소득세법
3. 부가가치세법
4. 상속세 및 증여세법
5. 국세기본법
6. 국세징수법
7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8. 종합부동산세법

2023 개정세법

발 행 일 2023년 2월 6일 5판1쇄
초판발행일 2019년 1월 25일

저 자 이승원, 이승철
발 행 인 박정화
등 록 제2015-000008호
발 행 처 용빈출판사
주 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
전 화 번 호 02-736-7701
F A X 02-725-1907
가 격 5,000원
I S B N 979-11-86964-51-4 (13320)

저자와의
협의 하에
인지를
생략합니다.

도서의 무단 인용·전재·복제를 금합니다.
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. 무단전재와 무단복제 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 가능합니다.

1 법인세법

1.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(법인령 §1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익금 항목** ○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○ 자산의 양도금액 ○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**〈추 가〉**	□ **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** ○ (좌 동) –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**행사 당시 시가**

〈**개정이유**〉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을 통한 과세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2.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(법인법 §18)

현 행	개 정 안
□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○ 「**상법**」 §461**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**을 **감액**하여 받는 **배당** **〈신 설〉** – 다만,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	□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**범위 조정** ○ (좌 동) – 내국법인이 **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**을 한도로 인정 – 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3.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(법인법 §18의2·18의3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

□ **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**

○ **기업형태**(지주/일반회사, 상장/비상장법인) 및 **지분율**에 따라 **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**

〈일반법인〉

상장법인	
지분율	익금불산입률
100% 30%이상 100%미만 30%미만	100% 50% 30%
비상장법인	
지분율	익금불산입률
100% 50%이상 100%미만 50%미만	100% 50% 30%

〈지주회사〉

상장법인	
지분율	익금불산입률
40%이상 100% 30%이상 40%미만 30%미만	100% 90% 80%
비상장법인	
지분율	익금불산입률
80%이상 100% 50%이상 80%미만 50%미만	100% 90% 80%

</td><td>

□ **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**

지분율	익금불산입률
50%이상	100%
20%이상 50%미만	80%
20%미만	30%

</td></tr>
</table>

〈개정이유〉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〈특례규정〉 '23년 말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

4. **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**(법인법 §15·21·41·57·57의2 개정, §18의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** ※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○ **(익금불산입 대상)**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**배당소득** ○ **(해외자회사 요건) 지분율** 10%* **이상**, 배당기준일 현재 **6개월 이상** 보유 *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% *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○ **(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) 이익**의 **배당금**, **잉여금**의 **분배금, 의제배당** ○ **(익금불산입률)** 95% □ **익금불산입 적용**에서 **제외**되는 **배당** ① **특정외국법인**(CFC)의 **유보소득 배당간주**를 적용받은 경우 ② **수동적 업종**(임대업 등) 또는 **수동소득**(이자·배당 등) 위주로 영위하는 **해외자회사***가 **실제 세부담율**이 15% **이하**인 경우의 **수입배당금액** *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③ **혼성금융상품***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* 부채·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– **(국 내) 자본**으로 보아 **배당소득**으로 취급 – **(상대국) 부채**로 보아 **이자비용**으로 취급 □ **해외자회사**(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) **주식**의 **취득가액 산정** ○ **취득원가**–**인수전 이익잉여금**에서 **배당한 금액 상당액** ① 내국법인이 **최초로** 주식을 **보유**하게 된 날의 **직전일** 기준 **이익잉여금**을 재원으로 한 **배당** ② **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**을 받은 **배당**

〈개정이유〉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5.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(법인법 §57⑤, 법인령 §94⑨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** ○ **적용대상 해외자회사** – **지분율 25%* 이상**, **배당확정일** 현재 **6개월 이상** 보유 *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%	□ **해외자회사 요건 완화** – **지분율 10%* 이상**, **배당기준일** 현재 **6개월 이상** 보유 * (좌 동) ※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

〈개정이유〉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*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6. 손금(필요경비)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(소득법 §34·59의4, 법인법 §2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손금(필요경비) 대상 기부금 종류** ❶ 소득의 50%(100%) **한도 손금(필요경비) 산입 기부금** ○ 국가, 지자체, 국방헌금, 이재민 구호금품 등 ❷ 소득의 10%(30%) **한도 손금(필요경비) 산입 기부금** ○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	□ **손금(필요경비)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** ❶ 명칭 : **"특례기부금"** ○ (좌 동) ❷ 명칭 : **"일반기부금"**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7.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(법인법 §2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50% 한도 기부금의 대상**	□ **특례기부금 대상 확대**
○ 국가, 지자체 등 ○ 국방헌금, 국군장병 위문금품 ○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○ 학교 등(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·연구비 목적 한정)	○ (좌 동)
〈추 가〉 ※ 한국장학재단은 '22.12.31.까지 50% 한도 기부금 단체로 인정	○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한국장학재단**에 대한 기부금

〈개정이유〉 기부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8.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완(법인법 §29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고유목적사업준비금***의 **익금 산입 사유** *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(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)	□ **익금 산입 사유 추가**
○ 법인 해산,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, 법인 간주단체 취소 등	○ (좌 동)
〈추 가〉	○ **고유목적사업 외 용도**로 지출한 경우
□ **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**	□ **체육단체 추가(국가대표 활동 관련 수익사업)**
○ 사립학교법인 ○ 사회복지법인 ○ 지출액 중 장학금 비율 80% 이상인 장학재단 ○ 기타 문화예술단체 등	○ (좌 동)
〈추 가〉	○ **대한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** 및 **대한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단체**로서 **기획재정부령**으로 **정하는 법인**

〈개정이유〉 과세체계 명확화

9. IFRS17 시행*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—책임준비금(법인법 §30, 법인령 §57, 법인령 §11·§19)

* IFRS17 :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'23.1.1.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「보험업법」 상 보험회사는 '23.1.1.부터 적용 의무
  - ▸(보험수익 인식) 종전 현금주의 → 발생주의 전환
  - ▸(보험부채 평가) 종전 취득원가 평가 → 현재가치 평가

현 행	개 정 안
□ **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**	□ **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**
○ **(적용대상) 보험사업**을 하는 **내국법인**	○ 「**보험업법**」에 따른 **보험회사**를 **적용대상**에서 **제외**
□ **수익의 범위**	□ **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**
〈추 가〉	○ **보험회사**의 **책임준비금 감소 금액**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**수익**으로 **계상**된 금액(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)
□ **손비의 범위**	□ **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**
〈추 가〉	○ **보험회사**의 **책임준비금 증가 금액**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**비용**으로 **계상**된 금액(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)

〈개정이유〉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·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0.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(법인령 §70) 및 해약환급준비금 신설(법인법 §42의3·§31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보험업 보험료·보험금 등 손익귀속시기 : 현금주의**	□ **IFRS17을 반영한 보험감독회계기준의 귀속시기 수용**
○ **(이자)** 수입일·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·손금 ○ **(보험료·보험금 등)** 수입일·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·손금	○ (좌 동)
〈신 설〉	○ **보험회사**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**이자·보험료·보험금 등**은 **보험감독회계기준**에 따라 **수익·비용으로 계상**한 경우, **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·손금**
〈신 설〉	□ **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** ○ **(손금산입)** 해당 사업연도 **해약환급금준비금**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**신고조정**으로 **손금산입**

〈개정이유〉 IFRS17 손익 귀속시기 수용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1.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(법인령 §89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** ○ **(원칙)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**와 **계속적**으로 **거래한 가격** 또는 **제3자 간에 일반적**으로 **거래된 가격** ○ **(예외)** 상장주식을 **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**로 거래한 경우 : **거래일 최종시세가액** – **경영권 이전**을 **수반**하는 경우 「**상증법**」 §63③을 **준용**하여 **20% 할증 적용** *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	□ **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** ○ (좌 동) – **경영권 이전**을 **수반**하는 경우 **20% 할증 적용(다만, 해당 주식이 상증령 §53⑧에 해당하는 주식*은 할증 제외)** * 중소·중견기업(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,000억원 미만)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

〈**개정이유**〉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

12.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(법인법 §13·45·46의4·76의13·9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이월결손금 공제한도** ○ **일반법인, 연결법인, 합병·분할법인, 외국법인** : 각 사업연도 **소득의 60%** ○ 중소기업 : 소득의 100%	□ 이월결손금 **공제한도 확대** ○ 60% → 80% ○ 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3.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(법인법 §51의2, 조특법 §104의3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유동화전문회사 및 PFV*** **등의 지급배당금**에 대한 **소득공제** *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 ; project financing vehicle)	□ **초과배당액*** **이월공제 신설** *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
○ 배당가능이익*의 90%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* 당기순이익+이월이익잉여금−이월결손금−이익준비금	○ (좌 동)

〈신 설〉	– **초과배당액**을 최대 **5년간 이월**하여 **공제** • **이월한 초과배당액**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**우선하여 소득금액**에서 **공제**
□ **PFV**의 **지급배당금**에 대한 **소득공제**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'25.12.31.

〈개정이유〉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14.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(법인법 §55)

현 행

□ **세율 및 과세표준**

과세표준	세 율
2억원 이하	10%
2~200억원	20%
200~3,000억원	22%
3,000억원 초과	25%

개 정 안

□ **법인세율 인하**

과세표준	세 율
2억원 이하	9%
2~200억원	19%
200~3,000억원	21%
3,000억원 초과	24%

〈개정이유〉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·일자리 창출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5.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(조특법 §7)

현 행

□ **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**

○ **(업종)** 제조업 등 **48개**

○ **(감면율)** 5~30%

본점 소재지	업 종	감면율(%)	
		소기업	중기업
수도권	■ 도(소)매업, 의료기관 운영업	10	–
	■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	20	–
지방	■ 도(소)매업, 의료기관 운영업	10	5
	■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	30	15

개 정 안

□ **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**

○ (좌 동)

○ (좌 동)

* **전기통신업,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% 감면**	* **특례 폐지**
	□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* * [소기업] 10% → 20% [중기업] 수도권 0% → 10%, 비수도권 5% → 15%
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○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16.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(조특법 §24)

현 행

□ **통합투자세액공제**

○ **당기분 기본공제(Ⓐ)+투자증가분 추가공제(Ⓑ)**

– **(기본공제(Ⓐ))** 당해 연도 투자액×**기본공제율**

구 분	공제율(%)		
	대	중견	중소
일 반	1	**3**	10
신성장·원천기술	3	**5**	12
국가전략기술	**6**	8	16

– **(추가공제(Ⓑ))** [당해 연도 투자액－**직전 3년 평균 투자액**]×**추가공제율***

*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: 3%
국가전략기술 : 4%

■ 추가공제액 한도 : 기본공제액의 200%

개 정 안

□ **공제율 조정**

○ (좌 동)

– **기본공제율 상향**

구 분	공제율(%)		
	대	중견	중소
일 반	1	**5**	10
신성장·원천기술	3	**6**	12
국가전략기술	**8**	8	16

– 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17.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(법인법 §6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** ○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**중간예납세액**이 **30만원** 미만 내국법인 ○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○ 국립대학법인, 산학협력단	□ **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** ○ **30만원 미만 → 50만원 미만** ○ 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8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(법인법 §7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** ○ 금융회사의 예·적금 등 : 14% ○ **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** : 25% 〈**신 설**〉	□ **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***를 통한 **지급** 시 **원천징수세율 인하** *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 ○ (좌 동) – **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**를 **통해**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: 14%

〈**개정이유**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19.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(소득법 §163의3 신설 등, 법인법 §120의4 신설 등)

현 행	개 정 안
〈**신 설**〉	□ **매입자발행계산서*** **제도 신설** * 계산서 : 사업자(판매자)가 면세 재화·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(매입자)에게 발급 →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○ 공급자가 면세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**관할세무서의 확인** 하에 **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** *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·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(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) ○ 발행대상,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권익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3.7.1. 이후 재화·용역 공급분부터 적용

20.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(법인법 §47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물적분할** 시 **적격요건** ① 사업목적의 분할* *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 포괄승계.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④ 기존 근로자 80% 이상 승계 **〈신 설〉** ※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,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	□ **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** ○ **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** 시 **적격분할**로 **보지 않음**

〈**개정이유**〉 조문 명확화

21.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(조특법 §100의32)

현 행	개 정 안
□ 적용대상 ○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○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	□ 적용대상 축소 (삭 제) (좌 동)
□ **기업소득 가산항목** ○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○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,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등	□ **기업소득 가산항목 축소** (삭 제) (좌 동)
□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(적용기한 연장)**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기업부담 완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2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·양도소득 비과세(소득법 §119의3, 법인법 §93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비거주자·외국법인**의 **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·양도소득**[*] **비과세** *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이자·양도소득 ① **(대상채권) 국채**(국채법§5①), **통화안정증권** ② **(투자방법)** ⅰ) **(직접 투자) 국내 보관기관**에 **직접 계좌**를 **개설**하고 국채 등 투자 ⅱ) **(간접 투자) 적격외국금융회사**[*]를 통해 국채 등 투자 *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,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③ **(신청절차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**에 비과세 적용 신청 ④ **(원천징수의무 특례) 국외공모펀드**의 투자자 중 **거주자·내국법인**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–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**해당 투자자**가 직접 **신고·납부**

〈개정이유〉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2 소득세법

1.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(소득법 §4②, 소득법 부칙 등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금융투자상품***으로부터 **실현된 소득**을 **합산과세**하는 **금융투자소득세 도입** * 주식, 채권, 펀드, 투자계약증권, 파생결합증권, 파생상품 등 ○ **(시행일)** '23.1.1.	□ **시행시기 유예** ○ '25.1.1.

〈**개정이유**〉 대내외 시장여건,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

2. 이자·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87의2, §88의2, §88의5, §89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** ○ **(대상)**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, ②비과세종합저축, ③조합 등 예탁금, ④조합 등 출자금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(좌 동) ○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

3.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1의22)

현 행	개 정 안
〈**신 설**〉	□ **청년도약계좌*** **과세특례 신설** *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○ **(가입요건)** ❶만 19~34세 ❷**총급여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** 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○ **(세제지원)**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**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** ○ **(운용재산)** 예·적금, 펀드, 국내상장주식 등 ○ **(납입한도)** 연 840만원 ○ **(의무가입기간)** 5년 *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·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○ **(적용기한)** '25.12.31.**까지 가입분**

〈**개정이유**〉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.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91의2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청년희망적금*** **이자소득 비과세 특례** *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(2~4%p 수준의 가산이자)을 지급 ○ **(가입요건)** 만 19~34세이며, **총급여 3,600만원** 또는 **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일 것** 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○ **(세제지원)** 만기(2년) 보유 시 **이자소득 비과세** — **(한도) 연 납입액 600만원**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**일까지 가입**	□ **적용기한 종료**

〈개정이유〉 청년장기자산계좌(9월 발표 예정)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

5.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(소득법 §129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(원천징수세율)** 42%	□ 42% → 45%* * 종합소득세 최고세율

〈개정이유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6.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26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뉴딜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** ○ **(대상)** 특정사회기반시설*에 대한 의무투자비율(50%)을 충족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*「민간투자법」 상의 사회기반시설로서,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·녹색산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 ○ **(세제지원)** 배당소득 9% 분리과세 ○ **(한도)** 투자금액 2억 원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종료**

〈개정이유〉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

7.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27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** ○ **(대상)** 「민간투자법」에 따른 공모 투·융자집합투자기구 ○ **(세제지원)** 배당소득 14% 분리과세(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) ○ **(한도)** 투자금액 1억원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(좌 동) ○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활성화 지원

8.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(조특법 §91의23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** ○ **(특례내용)**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**만기까지 보유 시** 발생하는 **이자소득 분리과세(적용세율** : 14%) ○ **(한도)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** ○ **(적용기한)** '24.12.31.까지 **매입분**

※ '21.5월 제출된 「국채법」 개정안(정부안)의 개정을 전제로 함

〈**개정이유**〉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9.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(소득령 §81)

현 행	개 정 안
□ 사업자의 **기부금 지출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** ○ **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** : 기준소득금액*－이월결손금 *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○ **우리사주조합기부금** : [기준소득금액－정치자금기부금－특례기부금－이월결손금]×30%	□ **고향사랑기부금*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설정** *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 ○ 정치자금기부금, **고향사랑기부금** 및 특례기부금 : (좌 동) ○ **우리사주조합기부금** : [기준소득금액－정치자금기부금－**고향사랑기부금**－특례기부금－이월결손금]×30%

○ **일반기부금** ※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: [기준소득금액－정치자금기부금－특례기부금－우리사주조합기부금－이월결손금]×30% *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: 이월결손금 → 정치자금기부금 → 특례기부금 → 우리사주조합기부금	○ **일반기부금** : [기준소득금액－정치자금기부금－**고향사랑기부금**－특례기부금－우리사주조합기부금－이월결손금]×30% *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: 이월결손금 → 정치자금기부금 → 고향사랑기부금 → 특례기부금 → 우리사주조합기부금

〈개정이유〉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 구체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10.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(소득령 §78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**	□ **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**
○ **(대상자)** 성실신고확인대상자*, 전문직 업종** 사업자 *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(농림어업·도소매업 등) 15억원, (제조업·숙박음식업 등) 7.5억원, (부동산업·서비스업 등) 5억원 ** 의료업, 약국업, 변호사업, 세무사업 등	○ **전체 복식부기의무자*** *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(농림어업·도소매업 등) 3억원, (제조업·숙박음식업 등) 1.5억원, (부동산업·서비스업 등) 7.5천만원
○ **(대상차량)**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○ **(전용특약)** 사업자,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	○ (좌 동)
○ **(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)**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**50%**	○ **100% 불산입** * 다만,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'24·'25년은 50% 불산입

〈개정이유〉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

〈적용시기〉 ① (가입대상 확대)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(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) '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－ 성실신고확인대상자·전문직이 아닌 경우 '26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11.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(소득령 §14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**	□ **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**
○ **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** *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	○ (좌 동)
○ **3천6백만원 미만** *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	
○ **2천4백만원 미만** *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	○ **인적용역***은 수입금액 기준을 **3천6백만원****으로 상향 * 퀵서비스배달원, 대리운전기사 등 ** 현재 '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에 포함되어 있음

〈**개정이유**〉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12.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(소득법 §12, 소득령 §8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임대소득 과세*** **고가주택 기준** *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	□ **고가주택 기준 합리화**
○ **기준시가 9억원** 초과	○ **기준시가 12억원** 초과

〈**개정이유**〉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13.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(조특법 §16의2·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벤처기업 스톡옵션*** **행사이익**** **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** *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**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	□ **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**
○ **(비과세)** 행사이익에 대해 **연간 5천만원 한도** 비과세 **〈신 설〉**	○ **비과세 한도 상향 : 연간 5천만원 → 2억원** – **누적한도*** : 5억원** *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
○ **(분할납부)**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**5년간 분할납부** 가능 **〈추 가〉**	○ (좌 동) – **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·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**

〈개정이유〉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

14.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(소득령 §1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** ○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○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**월 10만원 이하**의 식사대	□ **비과세 한도 확대** ○ (좌 동) ○ **월 10만원 이하 → 월 20만원 이하**
□ **종교관련종사자**가 받는 **비과세 되는 식사대** 등의 범위 ○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○ **월 10만원** 이하의 식사대	□ **비과세 한도 확대** ○ (좌 동) ○ **월 20만원** 이하의 식사대

〈개정이유〉 근로자 세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15.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(조특법 §18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**	□ **적용기간 변경**
○ **(내 용)** 19% 단일세율* 적용 * 종합소득세율(6~45%) 선택 가능 – 비과세·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	○ (좌 동)
○ **(적용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**	○ **(적용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**
○ **(적용기한)** '23.12.31.	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〈특례규정〉 '23.1.1.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

16.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(조특령 §80의3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	□ **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**
○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**퇴직소득**으로 과세 – 폐업·해산 – 가입자 사망 – 만 60세 이상이며, 10년 이상 납입자의 지급 청구 등	○ (좌 동)
○ **임의 해지**할 경우 **기타소득**(15%)으로 과세	○ (좌 동)
– (예외) **부득이한 사유**로 임의 해지 시 **퇴직소득**으로 과세 • 천재·지변의 발생 • 해외이주 • 3월 이상 입원치료 등	– (좌 동)
〈추 가〉	• **사회재난지역*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**가 필요한 피해 * 「재난안전법」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

〈개정이유〉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

17.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(소득법 §37⑤, 소득법 부칙, 법인법 부칙 등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**	□ **시행시기 유예**
○ **(과세대상)**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	○ (좌 동)
○ **(소득구분)** 기타소득	
○ **(과세방법)**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% 세율로 분리과세	
○ **(시행시기)** '23.1.1.	○ '25.1.1.

〈**개정이유**〉 가상자산 시장여건,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

18.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(소득법 §8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**	□ **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**

구 분	과세최저한
승마·경륜·경정·소싸움·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	배당률 100배 이하 & 환급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
슬롯머신등 당첨금품	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
복권 당첨금	건별 **5만원 이하**인 경우
그 밖의 기타소득금액	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

구 분	과세최저한
승마·경륜·경정·소싸움·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	(좌 동)
슬롯머신등 당첨금품	(좌 동)
복권 당첨금	건별 **200만원 이하**인 경우
그 밖의 기타소득금액	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19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(소득법 §52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**	□ **공제한도 확대**
○ **(대상)**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	○ (좌 동)
○ **(소득공제율)** 40%	○ (좌 동)
○ **(공제한도) 300만원**	○ **400만원**

〈**개정이유**〉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20.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87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** ○ **(대상)** – 무주택 세대주 –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* 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○ **(세제지원)** 납입액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– **(납입한도)** 연 240만원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(좌 동) ○ '25.12.31

〈개정이유〉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

21.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(조특법 §126의2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
○ (공제율) 결제수단·대상별 차등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>❶ 신용카드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❷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❸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 등*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❹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<td>40%</td></tr>
</table>
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
○ (공제한도) 급여수준·항목별 차등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총급여 / 공제한도</th><th>7천만원 이하</th><th>7천만원 ~1.2억원</th><th>1.2억원 초과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Min[총급여 ×20%, 300만원]</td><td>250</td><td>2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가 공제 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>100</td><td>100</td><td>100</td></tr>
<tr><td>대중교통</td><td>100</td><td>100</td><td>100</td></tr>
<tr><td>도서공연등</td><td>100</td><td>–</td><td>–</td></tr>
</table>
○ (적용기한) '22.12.31.</td><td>□ 공제체계 단순화,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
○ (좌 동)
○ 영화관람료 30% 공제율 적용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
<tr><td>❶ 신용카드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❷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❸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료 등*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❹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<td>40%</td></tr>
</table>
* (좌 동)
○ 공제한도 통합·단순화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총급여 / 공제한도</th><th>7천만원 이하</th><th>7천만원 초과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<u>300</u></td><td><u>250</u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추가 공제 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 rowspan="3"><u>300</u></td><td rowspan="2"><u>200</u></td></tr>
<tr><td>대중교통</td></tr>
<tr><td>도서공연등</td><td>–</td></tr>
</table>
○ '25.12.31.</td></tr>
</table>

〈**개정이유**〉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부담 경감

〈**적용시기**〉 (공제한도)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(영화관람료 사용분) '23.7.1.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

22.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4·16·117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** ○ **(투자단계)** 엔젤투자자 소득공제* * 소득공제율 : (간접투자) 10%, (직접투자) 30~100% ○ **(회수단계)** ❶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❷ 창투사등이 창업·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(좌 동) ○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벤처기업 투자 지원

23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
현 행			개 정 안		
□ **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**			□ **과세표준 조정**		
과 세 표 준		세율	과 세 표 준		세율
1,200만원 이하		6%	**1,400만원 이하**		6%
1,200만원 ~	**4,600만원 이하**	15%	**1,400만원** ~	**5,000만원 이하**	15%
4,600만원 ~	8,800만원 이하	24%	**5,000만원** ~	8,800만원 이하	24%
8,800만원 ~	1.5억원 이하	35%	8,800만원 ~	1.5억원 이하	35%
1.5억원 ~	3억원 이하	38%	1.5억원 ~	3억원 이하	38%
3억원 ~	5억원 이하	40%	3억원 ~	5억원 이하	40%
5억원 ~	10억원 이하	42%	5억원 ~	10억원 이하	42%
10억원 초과		45%	10억원 초과		45%

〈**개정이유**〉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4.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(조특법 §96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**	□ **적용기한 연장**
○ **(대상)**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(85m^2, 6억원 이하) 임대소득 * 단, 임대료 연 증가율 5% 이내	○ (좌 동)
○ **(감면율)** –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%, 10년 이상 75% –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%, 10년 이상 50%	
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○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

25.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(소득법 §59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근로소득세액공제**	□ **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**
○ **공제율** –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: 55% –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: 30% ○ **공제한도** – 총급여 3,300만원 이하 : 74만원 – 총급여 3,300만원 ~7,000만원 이하 : 74만원~66만원* * Max[74만원–(3,300만원 초과 급여액×0.8%), 66만원]	○ (좌 동)
–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: 66~50만원* * Max[66만원–(7,000만원 초과 급여액×1/2), 50만원]	– **총급여 7,000만원~1.2억원 이하** : 66~50만원* * (좌 동)
〈신 설〉	– **총급여 1.2억원 초과 : 50~20만원*** * Max[50만원–(1.2억원 초과 급여액×1/2), 20만원]

〈**개정이유**〉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6.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(소득법 §59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자녀세액공제** ○ **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**(셋째부터 30만원) **공제**	□ **공제대상 연령 조정** ○ **만 7세 이상 → 만 8세 이상** ※ '22.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→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

〈개정이유〉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7.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(소득법 §59의3, §64의4 신설, 소득령 §40의2)

현 행

□ **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**

○ 연금저축+퇴직연금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총급여액
(종합소득금액)</th><th colspan="2"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
(연금저축 납입한도)</th><th rowspan="2">세액
공제율</th></tr>
<tr><th>50세미만</th><th>50세이상</th></tr>
<tr><td>5,500만원 이하
(4,0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700만원
(4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900만원*
(600만원*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1.2억원 이하
(1억원)</td><td rowspan="2">12%</td></tr>
<tr><td>1.2억원 초과
(1억원)</td><td colspan="2">700만원
(300만원)</td></tr>
</table>

* '22.12.31.까지 적용

□ **연금계좌 납입한도**

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 : 연간 1,800만원

○ **추가납입** 가능

— ISA계좌* 만기 시 전환금액

*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
〈추 가〉

개 정 안

□ **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** 및 **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**

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

<table>
<tr><th>총급여액
(종합소득금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
납입한도
(연금저축 납입한도)</th><th>세액
공제율</th></tr>
<tr><td>5,500만원 이하
(4,500만원)</td><td rowspan="2">900만원
(600만원)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5,500만원 초과
(4,500만원)</td><td>12%</td></tr>
</table>

□ **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**

○ (좌 동)

○ **추가납입 항목 신설**

— (좌 동)

— **1주택 고령가구***가 **가격**이 **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**한 경우 그 **차액**(1억원 한도)

* 부부 중 1인 60세 이상

□ 연금계좌에서 **연금수령 시 과세방법**	□ 연금소득 **1,200만원 초과 시**에도 **분리과세 선택 가능**
○ 1,200만원 이하 : 저율·분리과세* 또는 종합과세 * (55세~69세) 5% (70~79세) 4% (80세~) 3% (종신수령) 4%	○ (좌 동)
○ 1,200만원 초과 : **종합과세**	○ **종합과세** 또는 15% **분리과세**

〈개정이유〉 개인·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

〈적용시기〉 (공제 대상 납입한도) '23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(추가납입) '23.1.1.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(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) '23.1.1.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28.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(소득법 §59의4 및 소득령§118의6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교육비 특별세액공제**	□ **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**
○ **(공제율)**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	○ (좌 동)
○ **(공제대상)**	
– (본인) 대학(원) 학비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	
– (취학전 아동) 유치원·어린이집 수업료, 학원비 등	
– **(초중고·대학생) 수업료, 교재비, 입학금 등**	
〈추 가〉	– **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**

〈개정이유〉 교육비 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29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주택기준 완화(조특법 §95의2·122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월세세액 공제**	□ **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**
○ **(대상)**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	○ (좌 동)
○ **(공제율)** 월세액의 **10% 또는 12%***	○ 월세액의 **15% 또는 17%***
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자	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자
○ **(공제한도)** 750만원	○ (좌 동)
○ **(대상 주택)**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**기준시가 3억원 이하**	○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또는 **기준시가 4억원 이하**

〈개정이유〉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30.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(조특법 §122의3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성실사업자 등*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** * 성실사업자(조특법),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○ **세액공제율** – 일반의료비 : 15% **〈신 설〉** – 난임시술비 : 20%	○ **의료비 세액공제 확대** – 일반의료비 : 15% – **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** : 20% – 난임시술비 : **30%**

〈개정이유〉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31.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(소득법 §48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퇴직소득 **근속연수공제액**	□ **근속연수공제액 확대**

근속연수	공 제 액
5년 이하	**30만원**×근속연수
6~10년	150만원+**50만원**×(근속연수−5년)
11~20년	400만원+**80만원**×(근속연수−10년)
20년 초과	1,200만원+**120만원**×(근속연수−20년)

근속연수	공 제 액
5년 이하	**100만원**×근속연수
6~10년	500만원+**200만원**×(근속연수−5년)
11~20년	1,500만원+**250만원**×(근속연수−10년)
20년 초과	4,000만원+**300만원**×(근속연수−20년)

〈개정이유〉 퇴직자 세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

32.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(소득령 §158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부동산 과다보유법인** 판정 시 **자산총액에서 제외**되는 **자산** ○ 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○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○ **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**에 의해 **증가한** 상증법 상 **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*** *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	□ **최대주주 보유주식**을 **자산총액에서 제외** ○ (좌 동) ○ **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**에 의해 **증가한 금융자산*** *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

〈**개정이유**〉 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3.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(소득령 §157, §167의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상장주식 '대주주' 과세기준** ○ **(판정)** 종목별 **일정 지분율** 또는 **일정 보유금액 이상** – **(지분율)** 코스피 1%, 코스닥 2%, 코넥스 4% 이상 – **(보유금액)** 10억원 이상 ○ **기타주주 합산 범위** **❶ 최대주주인 경우** – **6촌혈족** – **4촌인척** – 배우자 –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–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**❷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** – 직계존비속, 배우자,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	□ **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** ○ (좌 동) ○ **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** **❶ 최대주주인 경우** – 4촌이내 혈족 – 3촌이내 인척 – 배우자 –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– 혼외출생자의 생부·생모 –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**〈삭 제〉** ※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

	지분율	보유금액
코스피	1%	10억원
코스닥	2%	
코넥스	4%	

〈개정이유〉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4.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(소득령 §155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일시적 1세대 2주택자**에 대한 **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*** **요건** : ❶+❷ *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	□ **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**을 3년으로 **완화**
❶ (신규주택 취득기간)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	○ (좌 동)
❷ **(종전주택 양도기한)** – **(조정 → 조정*)**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**2년** 이내 *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·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– **(그 외)**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**3년** 이내	○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**3년** 이내

〈개정이유〉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
〈적용시기〉 '23.1.12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5.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(소득령 §150의22, §165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	□ **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과 일치**
○ (원칙) Max[❶, ❷] ❶ 1주당 순손익가치*와 1주당 순자산가치**를 3 :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*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/10% **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/발행주식수 ❷ (1주당 순자산가치×80%)의 가액 ○ (예외)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① 청산,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, 사업개시 후 1년 미만, 휴·폐업 중 법인	○ (좌 동)

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 법인	〈삭 제〉
〈추 가〉	④ 자산의 80%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⑤ 자산의 80% 이상이 주식인 법인 ⑥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

〈개정이유〉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(주식 양도소득세) 또는 '25.1.1. 이후 양도분(금융투자소득세)부터 적용

36.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(소득법 §9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**	□ **적용기간 확대**
○ **(개념)**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*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	○ (좌 동)
○ **(요건)** ❶ & ❷ & ❸ ❶ **(양도대상)**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* *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, 회원권 등	○ (좌 동)
❷ **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 이내** 양도	❷ **5년 → 10년**
❸ **(적용제외)**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–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–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–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	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37.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(소득법 §10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**	□ **적용기간 확대**
○ (개념)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*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	
○ **(요건)** ❶ & ❷ & ❸ & ❹	○ (좌 동)
❶ **(양도대상)**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*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* §97의2① 적용받은 경우	
❷ **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 이내** 양도	❷ **5년 → 10년**
❸ **(부당감소)** ⓐ < ⓑ ⓐ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+증여세액 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	○ (좌 동)
❹ (적용제외)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	

〈**개정이유**〉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38.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(소득령 §159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**을 **부담부증여** 시 양도로 보는 **채무액**의 **양도가액** 및 **취득가액**	□ **취득가액**을 **기준시가로 일원화**
○ **양도가액** – (원칙) 시가(실지거래가액) – (예외)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: Max[(평가가액, 임대료등의 환산가액*), 임대보증금] * (1년 임대료÷12%)+임대보증금	○ (좌 동)
○ **취득가액** – (양도가액이 **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**) : **기준시가** – (양도가액이 **임대보증금인 경우**) : **실지거래가액**	○ **취득가액** – **기준시가**

〈**개정이유**〉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9. **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**(§167의3①12의2, §167의4③6의2, §167의10①12의2, §167의11①1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다주택자**가 **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** 시 **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** ○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○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 ○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○ 장기사원용 주택 ○ 상속주택, 문화재주택 ○ 동거봉양, 혼인, 취학, 근무,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○ **보유기간 2년 이상**으로서 '22.5.10.**부터** '23.5.9. 까지 **양도**하는 주택	□ **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** ○ (좌 동) ○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'22.5.10.부터 '24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

〈**개정이유**〉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

40. **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**(소득법 §17①·87의6①·87의14)

현 행	개 정 안
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○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: **금융투자소득** ○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: **배당소득**	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**배당소득**으로 **일원화** ○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: **배당소득** ○ (좌 동)

구 분		소 득
분배	**원천 : 금융투자소득**	**금융투자소득**
	원천 : 금융투자소득 外	배당소득
환매·양도		금융투자소득

구 분		소 득
분배	**원천 : 금융투자소득**	**배당소득**
	원천 : 금융투자소득 外	
환매·양도		금융투자소득

〈**개정이유**〉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1.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(소득법 §87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	□ **양도의 정의 보완**
○ 자산의 매도·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○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	○ (좌 동)
〈추 가〉	○ **채권등의 상환, 신주인수권의 권리 소멸**

〈개정이유〉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양도의 정의 명확화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2.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 소득(금융투자소득)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(소득법 §87의1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**	□ **5,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**
○ **(5,000만원 공제대상)** –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–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– 중소·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-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	– (좌 동)
〈추 가〉	– **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·이전·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**
○ **(250만원 공제대상)** – 기타 금융투자상품	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3.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, 원천징수 신고·납부기한 일원화(소득법 §87의21·12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예정 신고기한** ○ **(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) 지급일**이 속하는 **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** ○ (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**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**) 지급일이 속하는 **달의 말일부터 2개월** ○ (**부담부증여시 채무액**에 해당하는 부분) **양도일**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2개월**	□ **예정 신고기한 일원화** ○ **지급일** 또는 **양도일**이 속하는 **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** * (상반기) 7.1.~8월 말일 (하반기) 1.1.~2월 말일
□ **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** ○ (일반) **반기 종료일**이 속하는 달의 **다음달 10일** ○ (중도 해지) **계좌해지일**이 속하는 달의 **다음달 10일**	□ **납부기한 일원화** ○ **반기 종료일**이 속하는 달의 **다음달 10일**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편의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4.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(소득법 §148의2)

현 행	개 정 안
〈**신 설**〉	□ **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** ○ 금융투자소득 **원천징수기간 종료일*** * 반기 종료일, 계좌 해지일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편의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5.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(소득령 §150의13)

현 행	개 정 안
□ 채권등 취득가액 ○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	□ **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등 상당액 차감(❶-❷)** ○ **❶**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**❷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 이자등 상당액**

〈**개정이유**〉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46. 차액결제거래(CFD)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(소득령 부칙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** ○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– 반대거래상계, 권리행사,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– 장외파생상품은 **이익지급일** 또는 **지급받기로 한날** **〈추 가〉**	□ **파생상품 수입시기 보완** ○ (좌 동) – **'25년 전 지급되어 비과세된 CFD* 배당금 상당액 : '25년 이후 최초 도래한 CFD 대금 청산 시기에 합산** * '24년말 미청산(수입시기 미도래) CFD

〈개정이유〉 과세형평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3 부가가치세법

1.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「도시정비법」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(부가령 §1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** ○ 「국세징수법」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·양도 ○ 「민사집행법」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·양도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**〈추 가〉**	□ **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** ○ (좌 동)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사업시행자의 **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·양도**

〈**개정이유**〉 「도시정비법」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인도·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2.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부가법 §2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 ○ 도서(도서대여 용역 포함) ○ 신문, 잡지, 관보, 뉴스통신 및 방송	□ **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** ○ 도서(**실내 도서열람**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) ○ 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3.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** ○ (**적용대상**) 배출권,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, 상쇄배출권 ○ (**적용기한**)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(좌 동) ○ '25.12.31.

〈**개정이유**〉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

4.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(조특법 §106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영유아용 기저귀·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**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삭제** **〈삭 제〉**

〈**개정이유**〉 양육비 부담 완화

5.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(부가령 §71①9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**	□ **외국법인 연락사무소**와 거래시는 **세금계산서 발급 의무** 부여
○ **(원칙)** 사업자는 **재화·용역** 공급시 **세금계산서 발급 의무**	○ (좌 동)
○ **(예외) 세금계산서 작성**을 하지 않을 수 있는 **재화·용역**	
– 택시운송사업자, **노점·행상**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·용역	– (좌 동)
– 소매업,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	
– 그 밖에 **국내사업장**이 없는 **비거주자·외국법인**에 공급하는 재화·용역	– **외국법인 연락사무소**는 **제외**

〈**개정이유**〉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6.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(부가령 §71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*** * 공급자가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	□ **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 확대**
○ **(신청 기한)**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**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**	○ (좌 동)
○ **(대상)** 거래 건당 **10만원**	○ **(대상) 거래 건당 5만원**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권익 보호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7. **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발급의무 강화**(부가령 §68, 소득령 §211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○ **(대상)** 직전연도 사업장별 **공급가액**(수입금액) **합계액이 2억원 이상***인 **개인사업자** * '23.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※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(총수입금액)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 의무발급 ○ **(기간) 당해연도 7.1. 부터 다음연도 6.30. 까지**	□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**범위 확대** 및 **기간 연장** ○ **(대상)** 직전연도 사업장별 **공급가액**(수입금액) **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**인 **개인사업자** ○ **(기간) 당해연도 7.1. 부터 계속하여 발급**

〈**개정이유**〉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

〈**적용시기**〉 ❶ (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) '24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❷ (의무발급 기간 연장) '23.7.1.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)부터 적용

8. **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**
(부가령 §75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거래형태 착오**로 인한 **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** ○ **(대상) 착오가 빈번**한 사례 –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,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, 위탁사업비 착오 **〈추 가〉** ○ **(요건)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**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, 부가가치세를 납부 –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,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, 위탁사업비 착오 **〈추 가〉**	□ **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** 의한 **세금계산서 발급오류**도 **매입세액공제 허용** ○ (좌 동) – (좌 동) – **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** ○ (좌 동) – (좌 동) – **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**는 **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**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권익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

9.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(부가령 §84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① 소득세법·법인세법에 따른 **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**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**〈추 가〉**	□ **제출서류 추가** ○ (좌 동) ③ 소득세법·법인세법에 따른 **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**

〈개정이유〉 납세 편의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7.1.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

10.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8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** ○ **(요건)**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·가공·공급하는 경우 ○ **(공제대상)** 중고차 취득가액 ○ **(공제율)** 10/110 ○ **(적용기한)** '22.12.31.	□ **적용기한 연장** ○ (좌 동) ○ '25.12.31.

〈개정이유〉 중고차 시장 활성화

11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(부가법 §63, 부가령 §11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간이과세자**에게 적용되는 **세액공제** ○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○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**〈추 가〉**	□ **세액공제 항목 추가**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**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**

〈개정이유〉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

〈적용시기〉 '23.7.1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4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.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(상증법 §12·74·75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상속세 비과세 대상** ○ **국가 지정문화재, 시·도 지정 문화재,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**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○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 농지 등(2억원 한도) ○ 정당,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	□ 비과세 대상에서 **국가 지정문화재 등 제외** **〈삭 제〉** ○ (좌 동)
□ **상속세 징수유예*** * 상속인·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○ 문화재 자료, 국가 등록문화재, 박물관 자료 **〈추 가〉** **〈신 설〉**	□ 징수유예 대상에 **국가 지정문화재 등 추가** ○ (좌 동) ○ **국가 지정문화재, 시·도 지정 문화재,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** ○ **국가지정문화재 등**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**납세담보 면제 허용**

〈**개정이유**〉 문화재의 장기 보존 유도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2.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(상증법 §20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상속세 인적공제대상** ○ **(자녀공제)** 자녀 ○ **(미성년자공제)**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	□ **공제대상 추가** ○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**태아 포함**

〈**개정이유**〉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3.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(상증법 §18, 상증령 §15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가업상속공제* 적용대상
*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
○ 중소기업
○ 중견기업 : 매출액 4천억원 미만

□ 공제한도
<table><tr><th>가업영위기간</th><th>공제한도</th></tr><tr><td>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<td>200억원</td></tr><tr><td>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<td>300억원</td></tr><tr><td>30년 이상</td><td>500억원</td></tr></table>
□ 피상속인 지분요건
○ 최대주주* & 지분 50% 이상(상장법인 3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
*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</td><td>□ 적용대상 확대

○ (좌 동)
○ 중견기업 : 매출액 5천억원 미만

□ 공제한도 상향
<table><tr><th>가업영위기간</th><th>공제한도</th></tr><tr><td>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<td>300억원</td></tr><tr><td>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<td>400억원</td></tr><tr><td>30년 이상</td><td>600억원</td></tr></table>
□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
○ 최대주주 & 지분 40% 이상(상장법인 2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</td></tr>
</table>

〈**개정이유**〉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4.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(상증법 §18, 상증령 §15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□ 사후관리 기간
○ 7년

□ 사후관리 요건
○ 업종 유지
–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
○ 고용 유지 : ❶&❷ 유지
❶ (매년) 정규직 근로자 수 8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% 이상
❷ (7년 통산) 정규직 근로자 수 10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% 이상</td><td>□ 사후관리 기간 단축
○ 7년 → 5년

□ 사후관리 요건 완화
○ 업종 변경 범위 확대
– 중분류 → 대분류
○ 고용 유지 완화
〈삭 제〉

❷ (5년 통산) 100% → 90%</td></tr>
</table>

○ **자산 유지** – 가업용 자산의 20%(5년 이내 10%) 이상 처분 제한	○ **자산 유지 완화** – 20%(5년 이내 10%) → 40%
○ **지분 유지** –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	○ (좌 동)
□ **사후관리 위반 시 기간별 추징율**	□ **사후관리기간 단축**(7년 → 5년)**에 따른 조문 정리**
○ **5년 미만** : 100%	○ (좌 동)
○ **5년 이상 7년 미만** : 80%	**〈삭 제〉**

〈개정이유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〈특례규정〉 '23.1.1.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

5.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(상증령 §15⑫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지분 감소 사유**	□ **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**
○ 상속인이 상속받은 **주식**을 **처분**하는 경우	
○ 해당 법인의 **유상증자** 시 **상속인**의 **실권** 등으로 **지분율**이 **감소**하는 경우	
○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**상속인**이 **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**	
〈추 가〉	○ 해당 법인의 **감자**로 인해 **보유주식 수**가 **감소**한 경우 – 단, **균등 무상감자**는 **제외**

〈개정이유〉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

6.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(상증법 §18, 상증령 §16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영농상속공제**[*] * 농업,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○ **(피상속인 요건) ❶ & ❷ 충족** ❶ 상속개시일 **2년 전**부터 계속하여 직접 **영농**(농업, 임업, 어업)에 **종사** ❷ 농지·초지·산림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㎞ 이내 거주 ○ **(공제한도) 20억원** **〈신 설〉**	□ **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** ○ **피상속인 요건 강화** ❶ **2년 → 10년** ❷ (좌 동) ○ **20억원 → 30억원** □ **공제 배제** ○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**탈세·회계부정**으로 **징역형·벌금형**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– **(범죄 행위)** 영농과 관련한 탈세·회계부정 – **(행위 시기)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**의 탈세·회계부정

〈개정이유〉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7.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(상증령 §16⑧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영농상속공제 적용**이 **배제**되는 **벌금형**의 **범위** ○ **다음의 행위**에 따라 **벌금형**을 받은 경우 – 「조세범처벌법」§3①에 따른 **조세 포탈**[*] * ❶포탈세액 3억원 이상 & 포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% 이상인 경우 또는 ❷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–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§39①에 따른 **회계 부정**에 해당하는 행위로서, **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**이 **자산총액의 5% 이상**인 경우

〈개정이유〉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탈세·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8.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(상증법 §71, 상증령 §6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** ○ ❶ 또는 ❷의 요건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 ❶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❷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	□ (좌 동)
□ **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** ○ **(대상) 중소·중견기업** ○ **(피상속인) 지분** 및 **가업종사** 요건 – **(지분) 최대주주** & **지분 50% 이상(상장법인 30%)** 5년 이상 계속 보유 – **(가업종사)** 5년 이상 경영+대표이사 등 재직 ○ **(상속인)** 18세 이상+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	□ **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** ○ (좌 동) – 50% **이상(상장법인** 30%) → 40% **이상(상장법인** 20%) – (좌 동) ○ (좌 동)
□ **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** ○ **가업상속재산 비율*** 50% **미만** : **10년** 또는 **3년 거치 후 7년** *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○ **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** : **20년** 또는 **5년 거치 후 15년**	□ **연부연납 기간 확대** ○ **20년** 또는 **10년 거치 후 10년** ※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

〈**개정이유**〉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9.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(상증령 §68⑧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연부연납 취소 사유** ○ 연부연납 허가 후 ❶~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사유 발생** 시, 당초 허가한 **연부연납**을 **취소**하거나 **변경**함 ❶ 지정된 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** ❷ **담보의 변경·보전**에 필요한 **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** ❸ 「**국세징수법**」상 **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**에 해당하는 경우	○ (좌 동)

〈신 설〉	□ **일부 상속인**의 **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규정 신설** ○ **체납 상속인**의 **체납세액**은 제공된 **담보로 일시에 우선 징수** ○ 체납 상속인을 제외한 **나머지 상속인**에 대해서는 **납세담보 제공**을 조건으로 **잔여기간**에 대해 **연부연납 변경 허가**

〈**개정이유**〉 상속·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

10.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(상증령 §69)

현 행	개 정 안
□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○ **분할납부세액**의 **납부일** 현재 **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**(연 1.2%) 〈**신 설**〉	□ **가산율 적용방법 합리화** ○ (좌 동) – **단, 연부연납 기간 중**에 **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**이 **변경**된 경우에는 **변경 전 기간**(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~ 이자율 변경일 전일)에 대한 이자율은 **변경 전 이자율** 적용

〈**개정이유**〉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〈**적용특례**〉 영 시행일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영 시행일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가능

11.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(상증령 §75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〈**신 설**〉	□ **물납 대상** ❶ 「문화재보호법」상 **유형문화재** 또는 **민속문화재**로서 **지정·등록문화재**로 지정·등록된 문화재 ❷ **회화**, **판화**, **조각**, **공예**, **서예** 등 **미술품**

〈**개정이유**〉 문화재 등의 관리·활용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2. **문화재 물납 신청 절차 등**(상증령 §75의2②·③, §75의3①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납세자의 물납 신청 절차** ○ 물납 신청자는 **상속세 과세표준 신고** 시 **물납신청서**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**제출** *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– **연부연납**의 경우에는 **분납세액 납부기한 9개월 전**까지 **신청** □ **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절차** ○ **관할 세무서장**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**관련 자료**를 **물납 신청일**부터 **2주 이내**에 **문체부장관**에게 **통보** □ **문체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** ○ **문체부장관**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**물납**을 **요청**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**일*** **이내**에 ❶~❹의 **자료**를 **관할 세무서장**에게 제출 *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,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❶ **문화재** 등에 대한 **평가의 적정성** ❷ **문화재** 등의 **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 가치**를 **입증**하는 **자료** ❸ **문화재** 등의 **활용 방안** 및 **계획** ❹ **그 밖에 문체부장관**의 **내부 심의 과정**에서 활용된 **자료**

〈**개정이유**〉 문화재 등의 관리·활용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3. **문화재 물납 허가 절차 등**(상증령 §75의3②~⑧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 절차** ○ 문체부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**관할 세무서장**은 **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❶~❸ 기간 이내**에 신청인에게 **허가 여부 결정·통지** ❶ **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** :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**9개월** ❷ **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** :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9개월**

	❸ **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** :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**9개월** ※ **관할 세무서장**은 국고손실 위험 판단을 위해 필요시 **감정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가능** □ **물납재산의 수납 절차** ○ **관할 세무서장**은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**물납 허가일**부터 **30일 이내**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**수납일 지정**

〈**개정이유**〉 문화재 등의 관리·활용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4. 문화재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(상증령 §75의4~6)

현 행	개 정 안
〈**신 설**〉	□ **물납 불허 사유** 및 **물납재산 변경** ○ **관할 세무서장**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❶~❹**의 사유**로 **관리·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* 물납을 **허가하지 않거나**, **다른 물납재산**으로 **변경**을 명할 수 있음 ❶ **저당권** 등 **재산권**이 **설정**된 경우 ❷ **소유권**이 **공유**로 되어 있는 재산 ❸ 문화재 등에 **훼손·변질**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❹ ❶~❸과 유사한 사유로서 **기획재정부령**으로 정하는 경우 □ **물납재산 변경 신청** ○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**1회**에 한해 **20일 이내**에 **다른 재산**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**물납 신청 가능** □ **물납신청 한도** ○ **상속세 납부세액**에서 **금융재산의 가액**과 **상장 유가증권의 가액**을 **차감**한 금액을 **초과할 수 없음** □ **물납 수납가액** ❶ **(일반) 상속재산의 가액** ❷ **(연부연납)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** 상속·증여세법에 따라 **평가한 가액** ※ 단, **관할 세무서장**은 ❶~❷**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**에서 **문체부장관**이 **평가한 금액**으로 조정 가능

〈**개정이유**〉 문화재 등의 관리·활용 강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5. **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**(상증법 §72의2, 상증령 §67의2·68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** ○ **(적용 대상) 가업상속공제 요건**을 **충족**하는 **중소기업**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*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○ **(납부유예 기간)**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**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**까지 **상속세*** **납부유예** * 납부유예 가능 세액 = 상속세 납부세액 × 가업상속재산가액 / 총 상속재산가액 □ **상속세 납부사유** ○ ❶~❻ 해당 시,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6개월 이내**에 **상속세** 및 **이자상당액*** **납부** * 상속세 납부액×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×[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÷365] ※ ❶~❹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, ❺~❻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❶ 정당한 사유 없이 **사후관리요건 위반**하는 경우 ❷ **1년 이상 휴업**하거나 **폐업**하는 경우 ❸ 상속인이 **최대주주** 등에 **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** ❹ 상속인이 사망하여 **상속**이 **개시**되는 경우 ❺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(주식등 제외)을 **양도·증여**하는 경우 (단, 40% 미만 양도·증여시 제외) ❻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**지분**이 **감소**한 경우 ※ ❹~❻의 경우,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·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(이자상당액 50% 면제)

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6. **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**(상증령 §69의2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납부유예 신청 절차** ○ 납부유예 신청자는 **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**를 **관할 세무서장**에게 **제출** *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□ **납부유예 허가 절차** ○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❶~❸ **기간 이내**에 신청인에게 **허가 여부 결정·통지** ❶ **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** :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**9개월** ❷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: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9개월** ❸ **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** :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**14일**

〈**개정이유**〉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7. **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**(상증법 §71의2, 상증령 §67의2·68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사후관리 기간 : 5년** □ **사후관리 요건** ○ **(가업 종사)** 상속인이 **가업**에 **종사**할 것 *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: ❶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❷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○ **(고용 유지)** 5년 통산 **정규직 근로자 수** 70% **이상** 또는 **총급여액** 70% **이상 유지** ○ **(지분 유지)** 상속받은 지분 유지 ※ **업종 유지 요건 없음**

〈**개정이유**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18.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(상증령 §24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등기·등록재산의 취득시기** ○ **등기·등록일**	□ **취득시기 명확화** ○ **등기·등록 접수일**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

19.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(상증령 §34의3)

〈법 개정내용(상증법 §45의3)〉

□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**일정 요건을 충족**하는 경우 **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 산출** 허용

○ **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** 및 **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 계산 방법** 등은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〈**신 설**〉	□ **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** ○ **(구분경리)**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를 **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**하여 기록 ○ **(최소 구분 단위)** 사업부문의 구분은 **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**으로 구분 □ **사업부문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계산 방법** ○ **과세여부 판단** – (중소·중견기업) 특수관계거래비율*이 정상거래비율** 초과 *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** 중소기업 : 50%, 중견기업 : 40% – (대기업) ❶특수관계거래비율 30% 초과 또는 ❷특수관계거래비율 20% 초과 & **특수관계매출액이** (1천억원×$\frac{\text{사업부문별 매출액}}{\text{총 매출액}}$) **초과** ○ **세후영업이익**=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○ **증여의제이익**=세후영업이익×(특수관계거래비율−A*1)×(지분율−B*2) * 1. 중소기업 : 50%, 중견기업 : 20%, 대기업 : 5% 2. 중소기업 : 10%, 중견기업 : 5%, 대기업 : 0% – **정상거래비율을 초과**하는 사업부문이 **2개 이상**인 경우, 사업부문별 **증여의제이익을 합산**하여 과세

〈**개정이유**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20.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(상증령 §34의3)

현 행	개 정 안
□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**증여이익에서 공제**하는 **배당소득 귀속기간** ○ **사업연도 말일**부터 증여세 신고기한*까지의 배당소득 * 다음 사업연도 6월말	□ **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** ○ **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**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

〈**개정이유**〉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21.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(상증령 §34의3⑧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** ○ 중소기업 간 거래 ○ 자회사와 거래* * (지분율 50% 이상) 매출액, (지분율 50% 미만) 매출액×지분율 ○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○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○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○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○ 중소·중견기업의 제품·상품 수출 목적 국내·국외 거래 ○ 대기업의 제품·상품 수출 목적 **국내 거래**	□ **과세제외 거래 확대** ○ (좌 동) ○ **제품·상품 수출*** **목적 국내·국외 거래** * 부가세법 §21②에 따른 수출 〈**삭 제**〉
〈**추 가**〉	○ **용역**의 **국외공급** ○ **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·외국법인**에 대한 **특정 사업*의 용역**의 **국내공급**(국외공급 목적)** * 부가령 §33②제1호 다목 및 바목 **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등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

〈**개정이유**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22. 상속·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(상증령 §53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** ❶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**중소기업**이 발행한 주식 ❷ **직전 3년 이내**의 사업연도부터 **계속하여** 법인세법상 **결손금**이 있는 경우 ❸ 평가기준일 전후 **6개월 이내**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**전부 매각**된 경우 ❹ **사업 개시 3년 미만**으로서, 각 사업연도의 **영업이익**이 모두 **결손**인 경우 ❺ 상속·증여세 **신고기한 내**에 법인의 **청산**이 **확정**된 경우 ❻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·증여받는 경우로서, **상속·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* 등 **〈추 가〉**	□ **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 주식 추가** ○ (좌 동) ❼ **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**이 **5천억원 미만인** 「중견기업법」상 **중견기업**이 발행한 주식

〈개정이유〉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5 국세기본법

1.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(국기령 §1의2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세법상 **특수관계인 중 친족**의 범위 ○ 6촌 이내의 혈족 ○ 4촌 이내의 인척 ○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 ○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**〈추 가〉**	□ 특수관계인 중 **친족 범위 축소** ○ **4촌 이내의 혈족** ○ **3촌 이내의 인척** ○ (좌 동) ○ **혼외 출생자의 생부·생모**

〈**개정이유**〉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

〈**적용시기**〉 '23.3.1. 이후 시행

2.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·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(국기법 §26의2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상속·증여세 부과제척기간** ○ **(원칙) 10년*** * 단,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 ○ **(특례)** 다음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(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) – 국외재산, 등기·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·서화·골동품 등을 상속·증여받은 경우 –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**〈추 가〉**	□ 부과제척기간 **특례대상 추가** ○ (좌 동) – **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***, **가상자산을 상속·증여**받은 경우 * (예)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(P2P) 등의 방법

〈**개정이유**〉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·증여세 탈세 방지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·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3.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(국기법 §26의2⑦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확정된 판결 등*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** * 행정소송,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, 조세심판청구, 감사원 심사청구 ○ **(특례내용)**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○ **(대상)** 판결 등의 결과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– 사업의 명의대여 –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**〈추 가〉**	□ **특례대상 확대** ○ (좌 동) – **재산의 실질 귀속자**

〈**개정이유**〉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

4.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(국기법 §40)

현 행	개 정 안
□ **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** ○ 출자자(1차 납세의무자)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○ 법률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된 경우(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) **〈추 가〉**	□ 외국법인의 **제2차 납세의무 보완** ○ (좌 동) ○ 출자자의 소유주식(출자지분)이 **외국법인이 발행한 것**으로서, **외국에 있는 재산**에 해당하여, 국세징수법에 따른 **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**된 경우

〈**개정이유**〉 외국법인을 활용한 탈세 방지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5.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보완(국기법 §35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·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** ○ **직전 소유자도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, 현재 소유자**의 **국세우선징수 한도 금액 계산 방법 규정** ○ 한도=해당 재산에 설정된 **저당권,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**보다 **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**
〈신 설〉	□ 당해세 우선의 예외 다음의 채권등은 그 **확정일자·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**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②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

〈개정이유〉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,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당해세인 국세보다 우선하도록 함

〈적용시기〉 '23.4.1. 이후 매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

6.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(국기법 §45의2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후발적 경정청구*** 허용 *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	□ **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**
○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**판결**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	○ (좌 동)
〈추 가〉	– **심사·심판 결정**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
○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○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, 결정,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	○ (좌 동)
○ 결정 또는 경정으로 **다른 과세기간**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	○ (좌 동)
〈추 가〉	– 경정 또는 결정으로 **다른 세목**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
○ 그 밖의 유사한 사유	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재결청의 심사·심판 결정분, 처분청의 결정·경정분부터 적용

7.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(국기법 §45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**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** 가능 ○ **(신고기한)**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○ **(신고대상)** –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**〈추 가〉** ※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·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	□ **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** ○ (좌 동) – **종합부동산세를 부과·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**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 권익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

8.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(국기법 §47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** ○ **(세액)** 과소납부액의 100~300%* *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(3개월 이내) 100%, (3~6개월) 200%, (이후) 300% **〈신 설〉**	□ **적용 제외대상 신설** ○ (좌 동) ○ **(적용 제외대상)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**

〈개정이유〉 인지세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

9.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(국기법 §47의3④)

현 행	개 정 안
□ 상속세·증여세 관련 **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** 대상	□ 가산세 **적용 제외대상 합리화**
○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(증여재산)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○ 상속공제(증여재산공제)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○ 상속재산(증여재산)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	○ (좌 동)
〈단서 신설〉	– **부정행위**로 상속세·증여세의 **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**한 경우는 제외
○ 경정 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– **부정행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하는 경우 제외**	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과소신고 가산세 운영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상속·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0.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(국기령 §48의2③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조세불복 시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**	□ **청구세액 기준 완화**
○ **(소득·재산 기준)** –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– 재산가액 5억원 이하 ○ **(제외 기준)** –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–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	○ (좌 동)
○ **(청구세액 기준)** – **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**	– **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**

〈개정이유〉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11.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·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(국기법 §6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"이의신청 결정"에 대한 심사·심판 청구기간** ○ **(원칙) 이의신청 결정 통지**를 받은 날부터 **90일** 이내 제기 ○ **(예외) 이의신청 결정기간**(30일) 내에 **결정 통지**를 **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**이 **지난 날**부터 심사·심판 청구 가능 **〈추 가〉**	□ **"이의신청 재조사 결정"에 대한 심사·심판 청구기간 규정 도입** ○ (좌 동) ○ **(예외)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**에 따른 **처분기간**(60일)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**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** 그 **처분기간**이 **지난 날**부터 심사·심판 청구 가능

〈개정이유〉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불복절차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통지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

12.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(국기법 §65, 국기령 §52의3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불복청구 결정 유형 ○ 부적법 : 각하 ○ 이유 없음 : 기각 ○ 이유 있음 : 인용 – 취소·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'재조사 결정' **〈추 가〉**	□ 재조사 결정 관련 **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** ○ (좌 동) – **원처분 유지 사유** ■ **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**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■ **청구인의 비협조**로 취소·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

〈개정이유〉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

13. 조세심판관·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(국기법 §73①, 국기령 §53⑮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**	□ 제척 **기준 합리화**
❶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(과거 대리인도 포함) ❷ ❶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(과거 친족도 포함)	○ (좌 동)
❸ ❶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(**과거 사용인 모두 포함**)	○ ❶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(**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**)
❹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·감정한 경우 ❺ 이전 5년 내 처분(처분의 세무조사 포함)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❻ 이전 5년 내 ❹ 또는 ❺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❼ 그 밖에 심판청구인·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	○ (좌 동)

〈**개정이유**〉 조세심판 및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조세심판관·국세심사위원 지정분부터 적용

14.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(국기법 §81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심판청구를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** ○ 다음 사항을 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① 행정소송이 제기된 **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** 및 결과 ②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**판결문 사본**

〈**개정이유**〉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분부터 적용

15.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(국기령 §63의6)

현 행	개 정 안
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**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** ※ 단,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	□ 면제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
❶ 수입금액 요건	
– 개인 : 간편장부대상자 규모* 이하 * 도·소매, 광업 등은 3억원, 제조·건설, 음식·숙박업 등은 1.5억원, 서비스업 등은 0.75억원	– (좌 동)
– 법인 : 수입금액 1억원 이하	– **3억원 이하로 확대**
❷ 성실성 요건(모두 충족) – 복식부기장부 기장·비치 –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–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(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) – 사업용계좌 개설·이용 (개인에 한함) –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–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	○ (좌 동)
〈추 가〉	– **지출증명서류 합계표** 작성·보관(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에 한함) – **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급**하고 **미교부 등이 없을 것**

〈**개정이유**〉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경감

〈**적용시기**〉 영 시행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

16.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(국기법 §85의3②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**	□ **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**
○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	○ (좌 동)
〈신 설〉	– **역외거래의 경우 7년**

〈**개정이유**〉 "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(7년)"을 감안하여 자료 보존기간 연장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17.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(국기법 §8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직무집행 거부** 등에 대한 **과태료**	□ 과태료 **상향 조정**
○ **(대상)** 세무공무원 질문*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·기피 * 개별 세법의 질문·조사권 근거	○ (좌 동)
○ **(과태료) 2천만원 이하**	○ **5천만원 이하**

〈개정이유〉 탈세방지를 위해 질문·조사권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

6 국세징수법

1.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(국징령 §94, 98, 101, 105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체납자의 인적책임 관련 규정**	□ **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**
○ **(원칙) 체납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조치 적용(인적책임 부과)** –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, 체납자료 제공,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, 명단공개 ○ **(예외) 다음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적용을 배제(인적책임 제한)** – 「부가가치세법」상 물적납세의무 – 「종합부동산법」상 물적납세의무 **〈추 가〉**	○ (좌 동) – **「국세기본법」상 물적납세의무(양도담보권에 의한 납세의무)**

〈개정이유〉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

2.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(국징법 §109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**	□ **임차인의 열람권 확대**
❶ **(열람권자)**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❷ **(열람대상)**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	○ (좌 동)
❸ **(열람절차)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**	❸ **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**
ⅰ) **열람기간 :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 가능**	ⅰ) **열람기간 :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**
ⅱ) **열람요건 : 임대인 동의 필요**	ⅱ) **동의 요건 예외 신설** • **(원칙)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 가능** • **(예외) 보증금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**
ⅲ) **열람기관 :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** **〈신 설〉**	ⅲ) **열람기관 : 전국 세무서** ⅳ) **통지의무 :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**

〈개정이유〉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
〈적용시기〉 '23.4.1.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3.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(국징법 §111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**에 **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** ○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**〈추 가〉**	□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**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** ○ (좌 동) ○ **금융투자소득**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

〈개정이유〉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
〈적용시기〉 '25.1.1.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

4. 납부기한 등의 연장·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(국징령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·유예** ○ **(내용)**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(분납포함) 및 고지의 유예 ○ **(사유)** 사업손실, 부도 우려,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○ **(연장·유예 기간) 9개월 이내** – **다만, 아래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가능(기간의 특례)** ❶ **중소기업에 해당** ❷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	□ **납부기한 등의 연장·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** ○ (좌 동) **〈삭 제〉** ❷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

〈개정이유〉 위기지역·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연장·유예하는 분부터 적용

5.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(국징법 §66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의 매각** ○ **(원칙)**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○ **(특칙)** 상장주식 또는 가상자산은 직접 매각 가능 **〈신 설〉** ※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 통지(단, 직접매각 시는 규정 없음)	□ **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** ○ (좌 동) – **직접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** ○ **체납자** ○ **납세담보물소유자** ○ **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**

〈개정이유〉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

6.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(국징법 §72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압류재산 공매 절차*** * 공매공고 → 입찰 → 개찰 → 매각결정 ○ **(매각결정기일) 개찰일부터 3일 이내**	□ **매각결정기일 연장** ○ **개찰일부터 7일 이내**

〈개정이유〉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

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
1.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(국조령 §25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** ○ **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: 임시유보 처분** – 다만 ❶~❸의 경우 **즉시 배당** 또는 **출자의 증가**로 **처분** ❶ 내국법인이 **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**하는 경우 ❷ 내국법인이 **폐업**한 경우 ❸ 과세당국 결정·경정일부터 **4개월** 이내에 **부과제척기간**이 만료되는 경우 ○ **배당 지급 간주 시점** – **이전금액통지서 받은 날 지급**한 것으로 간주	□ **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** ❶ **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** 및 **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**를 제출하는 경우 (좌 동) – **(과세당국 처분 시)**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– **(납세자 처분 시) 과세표준 신고일** 또는 **수정신고일**

〈**개정이유**〉 납세자 편의 제고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.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(국조법 §28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(해외지주회사 특례) 요건** ○ <u>각 사업연도말 현재</u> **❶, ❷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** ❶ 자회사*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* ①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% 이상 소유, ②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❷ 해외지주회사가 ①**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·배당 소득 등**을 고려하여 **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90% 이상**일 것	□ **소득금액 비율 적용 합리화** ○ **❶, ❷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** ❶ (좌 동) ❷ 해외지주회사가 ①**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·배당 소득 등**을 고려하여 **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<u>각 사업연도말 현재</u> 90% 이상**일 것

〈**개정이유**〉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

〈**적용시기**〉 '23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3.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(국조법 §25②·85 신설, 국조령 §104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□ **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**	□ **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**
○ **(적용대상)**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*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*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, 국외에서는 자본으로 취급	○ (좌 동)
○ **(적용요건)**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*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*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	
○ **(서류제출)**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	○ **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**
〈신 설〉	○ **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: 상품별 3천만원 한도** – **(기한내 미제출시)**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– **(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)**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

〈개정이유〉 혼성금융상품거래 신고의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4.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(국조법 §34의2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거주자·내국법인**이 **해외**에서 **과세 실체**로 보지 않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**국내**에서도 해당 단체를 **과세 실체**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□ **국외투과단체**에 **귀속되는 소득**에 대한 **과세특례 신청절차 등** ○ **(신청주체) 거주자·내국법인별 신청** – 법률에 따라 설치된 **기금** 및 **한국투자공사법**에 따른 **자산위탁** 등의 경우 각 **기금**(위탁기관)·**한국투자공사** 등이 신청 ※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○ **(신청기한)** 과세특례가 **최초 적용**되는 **과세연도** 또는 **회계기간**에 대한 **신청서를** 관할 **세무서장**에게 제출

	○ **(신청방법) 과세특례 적용**받으려는 **국외투과단체 각각**에 대해 **신청** – 다만, **다수**의 **국외투과단체**가 **연속적**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**최초**의 **국외투과단체**만 신청하면 다른 **국외투과단체**에 대해 **전부 신청**한 것으로 **간주** *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○ **(특례적용 포기)** 적용 신청 이후 **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** 포기 가능 ○ **(소득 인식시기) 국외투과단체에 귀속**되는 소득과 **동일 과세연도**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**즉시 귀속**되는 것으로 봄

〈개정이유〉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신청·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8 종합부동산세법

1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(종부세법 §8①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** *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=공시가격 합산액−기본공제금액 ○ **(일반) 6억원** ○ **(1세대 1주택자) 11억원** ○ **(법인)** 기본공제 없음	□ **기본공제금액 조정** ○ **6억원 → 9억원** ○ **11억원 → 12억원**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2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(종부세법 §9①·②)

□ **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**

과 세 표 준	2주택 이하	3주택 이상*
3억원 이하	0.6%	1.2%
3억원 초과 6억원 이하	0.8%	1.6%
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	1.2%	2.2%
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.6%	3.6%
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	2.2%	5.0%
94억원 초과	3.0%	6.0%
법 인	3.0%	6.0%

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

□ **세율 인하**

과 세 표 준	2주택 이하	3주택 이상
3억원 이하	0.5%	0.5%
3억원 초과 6억원 이하	0.7%	0.7%
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	1.0%	1.0%
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	1.3%	2.0%
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.5%	3.0%
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	2.0%	4.0%
94억원 초과	2.7%	5.0%
법 인	2.7%	5.0%

〈개정이유〉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3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(종부세법 §10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**[*] *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○ **(2주택 이하)** 150% ○ **(3주택 이상**[*]**)** 300% 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○ **(법인)** 상한 없음	□ **세부담 상한 조정** ○ **150%**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

〈적용시기〉 '23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4. 고령자·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(종부세법 §20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**1세대 1주택 고령자·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** ○ **(대상)** 다음의 **요건**을 **모두 충족**하는 자 – **1세대 1주택자** – **만 60세 이상** 또는 주택 **5년 이상 보유** – 직전 과세기간 **총급여 7천만원**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 – 해당연도 **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** ○ **(납부특례) 납세담보** 제공 시 **상속·증여·양도 시점**까지 **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** *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– **요건 미충족 사유**가 발생한 경우 **납부유예**를 **취소**하고 **세액** 및 **이자상당액 추징** ○ **(절차)** 납세자가 **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**(12.15.) **3일 전**까지 납부유예 **신청** – **관할 세무서장**은 **납부기한 종료일**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**통지**

〈개정이유〉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'22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